

#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6일 조성국 의원 외 33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3월 2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국 의원)

### □ 제안이유

-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 竹島の日)”을 상정하여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음.
-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독도(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침략적인 발상임.

-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은 1600년대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000년이나 앞서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군국주의적 망동이고 일본정부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어불성설의 역지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I.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을 제정코자 하는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I.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I.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서약하라.

I.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리저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전 국민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제363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안년월일 2005. 03. 16  
제안자 조성국 의원 등 34인

## 1. 주 문

86만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여 2005년 3월 16일 가결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어처구니 없고 침략적인 발생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신라 영토로 되었고, 태조 13년 930년에는 고려로 복속되었으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도 두말 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

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이 “무국적 무인도”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체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방치하고 TV광고 및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굳게 서약하라.
- I.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 I.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전 국민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 2. 제안이유

- 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 竹島の日)”을 상정하였음
- 나. 2005년 3월 10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
- 다. 본회의는 2005년 3월 16일 상정하면 대다수 의원이 발기한 상태로 가결이 확실시됨
- 라.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독도(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처우구니 없고 침략적인 발생임
- 마.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은 1600년대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000년이나 앞서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
- 바.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군국주의적 망동이고 일본정부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함

##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86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여 2005년 3월 16일 가결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어처구니 없고 침략적인 발상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신라 영토가 되었고, 태조 13년(930년)에는 고려로 복속되었으

며, 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고찰하여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만국에 밝힌바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이 “무국적 무인도”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방치하고 TV광고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  
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  
례를 즉각 폐지하라.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  
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I.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군국  
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굳게 서약하라.
- I.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  
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 I.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땀땀히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  
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서고 그 뜻을 86만 부천시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 3. 24.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